

제주지방법원 2020. 6. 11 선고 2020가단5239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순

피 고 제주특별자치도

소송대리인 B

변론 종결 2020. 5. 21

판결 선고 2020. 6. 11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가. 10,748,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. 7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계산한돈을 지급하고,나. 2020. 1. 23.부터 '서귀포시 C 도로 430m"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238,900원씩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80%는 피고가,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도로 430㎡를 인도하라는 취지

이 유

1. 기초사실

서귀포시 C 도로 430㎡(이하 '이 사건 도로'라고 한다)는 원고 소유인데 피고가관리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.

2. 이 사건 도로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는 소유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도로의 인도를 청구한다.

그러나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어서 피고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반면,원고가 점유하더라도 그 통행을 막을 수 없어서 사실상 소유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는 점,이 사건 도로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그 인도 청구는 큰 실익이 없는 권리남용이므로 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부당이득반환 청구

감정인 D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따르면, 원고가 청구하는 5년간 임료는 다음과 같다.

기간 임료 2014. 7. 9. - 2015. 7. 8. 1,135,370 2015. 7. 9. - 2016. 7. 8. 2016. 7. 9. ~ 2017. 7. 8. 2017. 7. 9. ~ 2018. 7. 8. 1,458,340 1,825,690 1,984,790 2018. 7. 9. ~ 2019. 7. 8. 2,789,490 2019. 7. 9. ~ 2020. 1. 22. 합계 1,555,160 10,748,84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, 2020. 1. 22.까지의 과거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10,748,8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9. 7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, 2020. 1. 23.부터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238,900원(연간 2,866,853원/12개월)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판사 장창국